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57556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3. 22 선고 2016나20163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575561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可고 1. A 주식회사

2. B

3.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4. C

5. D

변론 종결 2015. 6. 12.(피고 1, 2에 대하여) 2015. 11. 20.(피고 3 내지 5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6. 1. 15.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9,352,415원 및 그 중 1,071,619,527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1. 26.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4.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50,072,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250,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C, D 사이에 2014.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547,165,1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D는 각 207,922,754원, 피고 C은 131,319,6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우송디앤씨,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우송디앤씨,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평택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C, D 사이(이하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 이라 한다)에 2014. 5. 7. 체결된 매매계약을 875,106,00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D는 각 332,540,280원, 피고 C은 210,025,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보험약정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13. 11. 10.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한도 14억 9,6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발생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2013. 11.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6. 5.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6. 27. 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076,938,217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5,318,69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해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7,731,140원을 지출하였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2%, 위 회수금 5,318,690원에 대한 2014. 6. 27.의 확정지연손해금은 1,738원이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피고 D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당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매매대금 15억 3,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16. 피고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평택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7. 매매대금 66억 원, 매매지분은 피고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D가 각 100분의 38, 피고 C이 100분의 24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우송디앤씨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다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등 채권 합계 1,079,352,415원(= 대위변제금 1,076,938,217원 - 회수금 5,318,690원 +채권보전비용 7,731,140원 + 확정지연손해금 1,748원) 및 그 중 잔여 대위변제금1,071,619,52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4. 11. 26.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발생

1)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의 피고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4. 4. 30., 2014. 5. 7.에 각 체결되었으나,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있었다. 또한 2014. 6. 5. 피고 A에 당좌거래 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4. 6. 27.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해 위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피고 B의 무자력

1) 적극재산 : 합계 8,680,178,000원

부동산 내역	가액(원)	비고
이 사건 당진 부동산	1,225,072,000	
이 사건 평택 부동산	6,275,106,000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이하 'E 아파트'라 한다)	1,180,000,000	
합계	8,680,178,000	

2) 소극재산 : 합계 9,074,559,858원

채무 내역	금액(원)	비고
이 사건 당진 부동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75,000,000	

이 사건 평택 부동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727,940,858	
E 아파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0,000,000	
원고에 대한 채무	1,071,619,000	
합계	9,074,559,85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전국은행연합회장, 우리은행장, 국민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당진 부동산 및 평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고 A이 무자력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 A의 자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담보권이나 보전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약정한 각 매매대금이 시세에 따른 적절한 가격이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A, B을 처음 알게 된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으로서 피고 A, B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어 이를 전혀 알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그것이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갑 8호증, 을다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나 1, 2호증, 을다 1 내지 10호증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은 피고 B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불과 1주일 간격으로 각 도를 달리하여 소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합계 8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각매매대금 대부분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당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 이 사건 평택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 등 그 각 시가 에 근접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 매수를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은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한 후 이 사건 평택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우송디앤씨의 설립 목적과는 이질적이어서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굳이 매입한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 D, 우송디앤씨 등은 계약금만을 현실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대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약 15~20일 후 이를 각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이때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2007다28819 판결 참조).

2) 아래 사실은 앞서 이미 인정하였거나, 갑 8호증의 기재, 위 사실조회 결과 및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은 제1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4. 5. 30. 말소되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9억 7,500만 원이 다

나) 이 사건 평택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은 제2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4. 5. 30. 말소되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5,727,940,858원[= 3,489,400,858원(2003. 11. 11.자, 2005. 8. 10.자 근저당권) + 1,738,540,000원(2007. 7. 25.자 근저당권) + 500,000,000원(2011. 7. 27.자 근저당권)]이다.

다) 이 사건 당진 부동산의 2014. 5. 23. 당시 시가는 1,225,072,200원, 이 사건평택 부동산의 2014. 5. 22. 당시 시가는 6,275,106,000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후에도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해야 하되, 그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당진 부동산의 경우 250,072,000원(= 시가 1,225,072,000원 - 피담보채권 975,000,000원)이 된다. 이 사건 평택 부동산의 경우 547,165,142원[= 시가 6,275,106,000원 - (피담보채권 3,489,400,858원 + 1,738,540,000원 + 500,000,000원)]이

되고,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D는 각 207,922,754원(= 547,165,142원 $\times$ 38/100), 피고 C은 131,319,634원(= 547,165,142원 $\times$ 24/100)을 각 가액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 1)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서 이 사건 당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제1매매계약을 250,072,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250,0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또한, 피고 B과 피고 우송디앤씨 등 3인 사이에서 이 사건 평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제2매매계약을 547,165,142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D는 각 207,922,754원, 피고 C은 131,319,634원 및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피고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C, D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우송디앤씨,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최연미, 판사 정성중